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정 2014.09.19.

개정 2015.02.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하며, 영문은 『Gangnam Welfare Foundation』 약칭 『GWF』 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목적) 법인은 강남구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강남구와 자매결연·우호협정·교류협력 등을 맺은 단체 등과 복지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1(삼성동 50-2)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상가동 304호, 305호에 둔다.

제5조(사업) ①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3.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4.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7.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에 대한 긴급 구호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

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7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 ① 법인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강남구의 출연금,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제정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은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서류와 함께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3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익년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비상임)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1인 포함, 비상임)
3.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은 선임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선임 없이 강남구의 법인 소관국장이 되며, 당연직 감사는 강남구의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상실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강남구청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나 궐위 시에는 당연직 이사인 강남구청장소관국장이 보선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1월전까지 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9조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해임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이사장 및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참석이사, 감사의 기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30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집행기관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법인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에 의한 선임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인의 직제 및 정원,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 직원의 정원, 보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직원의 겸직제한) 법인의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3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위 원 회

제33조(위원회 설치) ①법인은 제3조 및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소관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 또는 국·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사업의 대행) 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41조(공무원 파견)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자료요청 등) ①법인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보고·검사·감사) 법인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보고·검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자체 감사) 법인의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공고) ①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사항 공고는 강남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나 강남구 또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법인의 기부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인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정치활동 금지) 법인은 기부금을 받는 동안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4. 9.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법인설립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구청장이 행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15.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재 산 목 록

재산 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 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기본재산
현 금	민간후원금	408,150,000	기본재산
합 계		2,408,150,000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